

경기도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2차 기획팀 팀장 이태석, TEL : 031-702-5353, FAX : 031-702-0075, e-mail : its@kunsu.co.kr
464-110,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-5번지, <http://www.hillstate.co.kr>

문 서 번 호 : HDEC-GD07-2016-1480

2016.09.28

수 신 : 인천시 장애인복지과

참 조 : 특별공급 담당자

제 목 :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협조 요청의 건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에서 건설하는 경기 광주시 「힐스테이트 태전 2차」의 특별공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명단 송부 요청드립니다.

- 아 래 -

구 분	예정사항
분양 승인	2016.10.06.(목)
입주자 모집공고	2016.10.06.(목), 문화일보(석간)
특별공급 일정	청약접수 : 2016.10.11.(화), 10:00~15:00 당첨자발표 : 2016.10.11.(화), 16:30
장 소	464-110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-5번지 힐스테이트 태전 2차 건본주택

※ 특별공급 신청 대상 세대 및 필요서류는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힐스테이트 태전 2차 분양사무소 (직인생략)

<별첨 #01. 특별공급 안내문>

힐스테이트 태전 2차 10단지(C10블럭), 11단지(C11블럭)

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1. 공급개요 및 일정

■ 공급위치

- ① 10단지 : 경기도 광주시 태전 7지구 C10블럭 (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13-3번지 일원)
- ② 11단지 : 경기도 광주시 태전 7지구 C11블럭 (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13-7번지 일원)

■ 공급규모

- ① 10단지 : 아파트 지하 3층, 지상 20~23층 5개동, 총 394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(특별공급 118세대 포함)
- ② 11단지 : 아파트 지하 4층, 지상 17~23층 10개동, 총 706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(특별공급 218세대 포함)

■ 기관 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

- ① 10단지 (36세대)

구분	주택형						
	62A	72A	72B	72C	72D	84	계
기관 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등)	4	8	2	6	6	10	36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- ② 11단지 (68세대)

구분	주택형					
	62A	62B	72A	72B	84	계
기관 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등)	13	11	17	11	16	68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2. 특별공급 신청자격

■ 대상자 및 자격
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10.06.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대상자,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)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. (단, 이주대책대상자 중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)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

- ① 청약예금 :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.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.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청약예금 지역·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. 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장 제4절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다자녀 / 노부모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.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 「주택공

- 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(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)를 제외함.
-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.
- ※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.
- ※ 청약 예치기준금액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9조 3항 관련, 별표 2)

구 분	광주시 및 경기도	인천광역시	서울특별시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400만원	6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700만원	1,000만원
모든 면적	500만원	1,000만원	1,500만원

- ※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2015.02.27)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.

■ 유의사항

-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함. 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-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,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) 단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.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4호)
 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 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‘가’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.
-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.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
-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.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.
-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.
-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.
-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. (신청자, 배우자,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,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,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 제외)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10.06. 예정) 현재,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. 단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.(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)

3. 특별공급 일정 및 방법

■ 공급일정

신청일자	당첨자 선정	동호수 발표	계약체결	장소
2016.10.11.(화) 10:00~15:00	2016.10.11.(화) 16:30	10단지 : 2016.10.20.(목) 11단지 : 2016.10.19.(수)	2016.10.25.(화) ~ 2016.10.27.(목)	당사 견본주택

※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.

※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.

※ 당첨 동·호수 확인 방법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ap2you.com)

■ 당선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]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에 의함.
-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,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

■ 당선자 선정 유의사항

-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- 특별공급 동·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·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. (동·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)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0조 제5항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·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(전산관리지정기관)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·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.
-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. (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)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.
-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. (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)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「주택법」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(24회)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.

■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	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서약서	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인감도장	본인	-
	○		주민등록증	본인	또는 운전면허증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구성원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
	○		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
		○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10.06. 예정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
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
임임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
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■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



홈페이지 : <http://www.hillstate.co.kr>

견본주택 :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-5번지

문의전화 : 031-702-5353

<별첨 #02. 힐스테이트 태전 2차 참고자료>

■ 조감도 (통합 1)



■ 조감도 (통합 2)



■ 단지배치도 (통합)

